

# 아제르바이잔(Azerbaijan)

## 1 근거법 제정 시기

- 최초법 : 1956년
- 현행법 : 1997년(사회보험), 2001년(개인기록), 2006년(근로연금 및 사회부조)

## 2 제도형태

- 명목확정기여(NDC) 및 사회부조제도

## 3 적용대상

- 명목확정기여(NDC) : 자영자, 집단농장 근로자, 지주, 외국인을 포함한 아제르바이잔에 거주하는 모든 근로자
- 사회부조 : 아제르바이잔 국민

## 4 재원조달

- 가입자
  - 명목확정기여(NDC)
    - 총소득의 3%
    - 보험료 산정을 위한 소득 상하한 없음
    - 가입자 보험료는 질병 및 출산급여, 장제비, 자녀양육급여의 재원이 됨
  - 사회부조 : 없음
- 자영자
  - 명목확정기여(NDC)
    - 무역 또는 건설업 종사 자영자의 경우 국가 월 최저임금의 50%; 다른 모든 자영자에게는 국가 월 최저임금의 20%. 보험료율은 지역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법정월최저임금은 130 마나트(manat)
    - 보험료 산정을 위한 소득 상하한 없음
    - 자영자 보험료는 질병 및 출산급여, 장제비, 자녀양육급여의 재원이 됨
  - 사회부조 : 없음
- 사용자
  - 명목확정기여(NDC)
    - 임금지급총액의 22%
    - 보험료 산정을 위한 소득 상하한 없음
    - 사용자 보험료는 질병 및 출산급여, 장제비, 자녀양육급여의 재원이 됨

- 사회부조 : 없음

○ 정부

- 명목확정기여(NDC)
  - 보조금 지급; 특별노령보조금 재원; 사용자로서 기여함
  - 보험료 산정을 위한 소득 상하한 없음
- 사회부조 : 총 비용

## 5 급여종류별 수급요건

○ 노령급여

- 노령근로연금(명목확정기여)
  - 보험가입 고용기간 최소 25년 (사법, 이민, 재해 대책 본부 근무자는 35년; 수감자 및 억류자 연관 업무 종사자 일부 30년) 이상 또는, 최소 15,840 마나트(manat)의 명목계좌잔고가 있는 63.5세 남성(1년에 6개월씩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2027년 7월에는 65세) 또는 60.5세 여성(1년에 6개월씩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2027년 7월에는 65세)
  - 보험가입 고용기간이 25년 이상이며 최소 5명을 출산하여 8세까지 양육하고 최소 15,840 마나트(manat)의 명목계좌잔고를 보유한 모친에게는 각 자녀 당 1년씩 퇴직연령 감소
  - 보험가입 고용기간은 군복무 및 대체 복무로 인한 보험료 미납부기간; 1급 장애인, 18세 미만 장애아동 또는 70세 이상 고령자를 간호한 기간; 실업수당 또는 고용훈련기간; 산재 또는 직업병으로 인한 장애 1·2 등급 장애근로연금 수급기간; 18세 미만부터 은퇴시기까지 장애근로연금 수급기간 포함
  - 조기연금 : 비위생적 또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로한 기간 12.6년 이상을 포함하여 보험에 가입된 고용기간이 25년 이상인 60세 남성; 비위생적 또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로한 기간 10년 이상을 포함하여 보험가입 고용기간이 20년 이상인 55세 여성. 최소 15,840 마나트(manat)의 명목계좌잔고를 가졌어야 함
  - 점진적 퇴직연금 : 일반 퇴직연령에 도달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근로하는 수급자에게 지급
  - 특별보조금 : 장애가 있거나, 장애인녀를 양육하거나, 참전용사, 정치적 탄압의 희생자와 같은 특정한 자들에게 지급
  - 노령근로연금은 상호협정 하에 해외지급이 가능함(자국민만 해당)
- 노령사회수당(사회부조)
  - 67세(남성) 또는 62세(여성)이며 명목확정기여(NDC) 노령 근로연금 수급자격이 없는 자; 최소 3명을 출산·양육하거나 장애가 있는 1명의 자녀를 8세까지 양육한 57세 여자
  - 근로는 중지되어야 함

○ 장애급여

- 장애근로연금(명목확정기여(NDC))

- 보험가입 고용기간이 5년 이상이고 15세 이후 근로한 매년마다 보험에 가입된 고용기간이 4개월 이상이어야 함. 연금은 3개의 장애등급에 따라 지급
  - 1급 : 완전장애, 어떠한 근로활동도 불가능하고 지속적인 간병 필요
  - 2급 : 장애, 어떠한 근로활동도 불가능하지만 지속적인 간병은 필요 없음
  - 3급 : 일반 근로활동 불가능
- 2급 또는 3급 장애의 경우, 명목계좌잔고가 최소 월 장애 근로연금을 지급하기에 충분한 금액이어야 함
- 최소 월 장애 근로연금은 116.27 마나트(manat)
- 보험가입 고용기간은 군복무 및 대체 복무로 인한 보험료 미납부기간; 1급 장애인, 18세 미만 장애아동 또는 70세 이상 고령자를 간호한 기간; 실업수당 또는 고용훈련 기간; 산재 또는 직업병으로 인한 장애 1·2 등급 장애근로연금 수급기간; 18세 미만부터 은퇴시기까지 장애근로연금 수급기간 포함
- 의료위원회는 영구장애로 확인될 때까지 주기적으로 장애정도를 평가·판정
- 장애 근로연금은 상호협정 하에 해외지급 가능(자국민만 해당)
- 장애사회수당(사회부조)
  - 1급, 2급, 3급 장애인으로 장애근로연금 수급자격이 없는 자; 18세 미만의 장애가 있는 자녀에게 지급

#### ○ 유족연금

- 유족근로연금(명목확정기여(NDC))
  - 사망자의 보험가입 고용기간이 5년 이상이고 15세 이후 근로한 매년마다 보험가입 고용기간이 4개월 이상이어야 함. 명목계좌잔고가 최소 월 유족 근로연금액을 지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해야 함
  - 월 최소 유족 근로연금액은 116.27 마나트(manat)
  - 수급자격이 있는 유족은 퇴직한 1급 또는 2급 장애인 배우자, 18세 미만인 사망자의 자녀를 양육하는 비근로 배우자, 18세 미만의 자녀(학생이라면 23세, 18세 이전에 장애인이라면 연령제한 없음). 기타 수급자격이 있는 유족은 퇴직하거나 장애1급·2급에 해당하는 피부양 부모; 사망자의 8세 미만의 자녀, 형제, 손자녀 중 1명 이상을 양육하는 비근로 부모, 조부모, 형제임
  - 유족보조금 : 사망한 아제르바이잔 국가적 영웅의 가족 구성원 및 국가의 독립을 위해 투쟁하다 사망한 시민의 가족에게 지급
  - 유족근로연금은 상호협정 하에 해외지급 가능(자국민만 해당)
- 유족사회수당(사회부조) : 사망자가 노령 또는 장애 근로연금을 수급하지 않았거나 수급자격이 없었던 경우 피부양 유족에게 지급
- 장제비(명목확정기여(NDC)) : 노령 또는 장애 근로연금 수급자 사망 시 지급

## 6 급여종류별 지급액

#### ○ 노령급여

- 노령근로연금(명목확정기여)

- 월 연금액은 <명목기여의 총 가치 ÷ 퇴직 시 평균 기대여명(현재 144개월)>에 근거함
- 명목기여의 총 가치는 2006년 1월 1일 이전 근로연수와 2006년 1월 1일 이후의 보험료 납부 가치에 근거함
- 조기연금 : 노령근로연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
- 점진적 퇴직연금 : 노령 근로연금의 100%가 지급됨; 연금은 6년의 가입 기간마다 재산정되며 완전한 퇴직 이후에 재산정됨
- 특별 보조금 : 1급 시각 장애인에게는 월 110 마나트(manat), 다른 1급 장애인들에게 22 마나트 지급; 1급 장애가 있는 참전 용사들에게 월 110 마나트(대조국전쟁(Great Patriotic War)에 참전한 자에게는 154 마나트), 2급 장애인에게는 77 마나트(대조국전쟁(Great Patriotic War)에 참전한 자에게는 121 마나트(manat), 3급 장애인에게는 55 마나트(대조국전쟁(Great Patriotic War)에 참전한 자에게는 99 마나트); 장애가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재활 치료를 받은 정치적 탄압의 피해자를 돌보는 자에게 11 마나트(manat) 지급 (2017년 7월 기준)
- 노령근로연금 수급자는 한 가지의 특별 보조금만 받을 수 있음
- 급여조정 : 노령근로연금은 매년 국가 월평균임금액의 증가에 근거하여 조정
- 노령사회수당(사회부조) : 월 72.60 마나트(manat) 지급
  - 급여조정 : 노령사회수당은 최소 1년에 한 번 조정

#### ○ 장애급여

- 장애근로연금(명목확정기여)
  - 월 장애근로연금은 <명목기여의 총 가치 ÷ 예상연금 지급개월 수 × 보험지속계수>에 근거함
  - 명목기여의 총 가치는 2006년 1월 1일 이전 근로연수와 2006년 1월 1일 이후의 보험료 납부 가치에 근거함
  - 보험지속계수는 <장애근로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된 고용기간 개월 수 ÷ 192>
  - 월 최소 장애근로연금 : 116.27 마나트(manat)
- 장애사회수당(사회부조)
  - 월 81.07 마나트(manat)가 1급 장애인과 장애가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에게 지급; 2급 장애인에게는 월 60.50 마나트(manat); 3급 장애인에게는 월 52.03 마나트(manat) 지급
  - 방사선 사고가 원인인 질병을 가진 자들은 의학적 치료를 위해 연 237 마나트(manat) 지급
  - 급여조정 : 장애사회수당액은 최소 1년에 한 번씩 조정

#### ○ 유족급여

- 유족근로연금(명목확정기여)
  - 연금은 장애근로연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되며, 수급자격이 있는 유족에게 균등 분할됨
  - 월 유족근로연금 합계액은 최소 116.27 마나트(manat)

- 유족 보조금 : 사망한 아제르바이잔 국민 영웅의 가족 구성원에게 월 110 마나트 (manat) 지급; 국가의 독립을 위해 사망한 국민의 가족 구성원에게 월 93.5 마나트 (manat) 지급(2017년 기준)
- 유족사회수당(사회부조) : 월 66.55 마나트(manat) 지급
  - 유족의 사회수당은 최소 1년에 한 번 조정
- 장제비(명목확정기여) : 최소 월 근로연금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 월 최소 근로연금은 116.27 마나트(manat)

---

## 7 관리운영기관

---

- 국가사회보호금고(State Social Protection Fund, SSPF)
  - 노동사회보호부(Ministry of Labor and Social Protection of Population) 산하
  - 사회부조 및 명목확정기여제도 운영, 보험료 징수
  - <http://sosial/gov.az>
  - 지역사무소 및 지점을 통해 명목확정기여제도 관리

<2018년 ISSA 자료>